



2010년 이후 바뀌는 세법 내용

글 | 정태화 세무사

1. 소득세를 8,800백만원 이하의 부분만 인하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백만원초과 4,600백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백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25%에서 24%로 각각 1%씩 인하되지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은 35%에서 33%로 내릴 계획이었지만 2011년까지 35%가 유지된다. 즉 8,800만원까지는 세율이 1% 내리지만 그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35%가 2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법인세율의 부분 인하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과 같이 2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1%에서 10%로 1% 포인트 내려갑니다.

3.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무신고 가산세 부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잔금청산 또는 등기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10.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되어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 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시 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무신고 가산세도 50% 경감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4,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과세표준이 3,600만원이 경우 171,000원, 6,000만원인 경우 29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 12. 31일 이전인 토지를 2010. 12.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5%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과세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화 주택월세, 상가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3주택 이상자에 한해 부과되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됩니다.

5. 월세 소득공제 신설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고 직불, 선불카드의 공제를 인상

지금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지만 2010년에는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조정됩니다. 다만 직불, 선불카드의 공제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집니다.

7. 장마저축 세제지원 개편

20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돼 있었지만 가입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09년 말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 불입 분까지 3년간 허용됩니다.

8.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부분 연장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금의 3% 또는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09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까지 부분적으로 연장된다. 2010년에는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만 7%를 공제해줍니다.

9. 계부, 계모 증여도 증여세 공제

재혼가정 증가를 감안해 계부나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하게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2009년까지는 직계존속(계부, 계모 제외)에 한하여 증여공제 하였습니다.

10.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 발급시 과태료 부과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1회 3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11.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2010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산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줍니다.

12.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세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납부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고 대상도 법인사업자까지 추가하며 모든 세금으로 확대합니다.

